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재물손괴

[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. 2. 9. 2009고단436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조은수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윤선애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